

## 출산장려정책 '백약이 무효'...전남 출산율 1.33명

해남군 2.10명 '최다' · 목포시 1.04명 '최소'  
신생아 양육비 ·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효과無  
"시·군 정책 아이 낳는 세대에 도움 안돼"

전남도와 일선 시·군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.  
28일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전남도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△2013년 1.50

명 △2014년 1.52명 △2015년 1.55명 △2016년 1.47명 △2017년 1.33명으로,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.  
시·군별(2017년 기준)로는 해남이 2.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△영암

1.78명 △장성 1.64명 △완도 1.63명 △신안 1.60명 △영광 1.54명 △강진·진도 1.53명 △나주 1.50명 △보성 1.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출산율이 가장 낮은 시·군은 목포 1.04명이었다. 화순(1.07명)·장흥(1.11명)·곡성(1.14명)·고흥(1.15명)·순천·무안(1.18명)구례(1.25명) 등이 뒤를 이었다.

지난 2017년 도내 출생아 수는 모두 1만3331명으로 전년도 1만3429명에 비해 98명 감소했다.  
전남도 22개 시·군은 낮은 출산

율을 극복하기 위해 세금 감면혜택과 육아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 추세는 피하지 못하고 있다.

영광군은 지난 1월 인구절벽지정책실을 신설한 뒤 맞춤형 인구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

군은 올해부터 신생아 양육비 500만원(첫째), 1200만원(둘째), 1500만원(셋째), 2000만원(넷째), 3000만원(다섯째)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.  
강진군은 올해 도내 신규 주택을 구

입한 5년 이하 신혼부부(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)와 미성년 세 자녀 이상(자녀 중 1명은 만 12세 미만)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대출금액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.

전남도도 각 시·군들도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인구구조 형성과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,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대·창출,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'백약이 무효'인 실정이다.

전남의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"전남 인구 190만명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다"며 "이는 전남도와 각 시·군의 정책이 아이를 낳는 세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"라고 지적했다.

한편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장래인구특별추계(시·도편) 2017~2047년을 통해 2017년부터 30년간 전남은 18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.

## '제2운창호법' 효과...전남지역 음주운전 적발 29.4% 감소

사고·사상자도 각각 30% 정도 줄어



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'제2운창호법' 시행 이후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 
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

난 6월25일부터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총 948건이 적발됐다.  
먼저 정지는 269건이었고, 취소수치는 645건, 측정거부는 34건으로 집

계됐다. 지난해 같은 기간 총 적발 1343건에 비해 29.4%가 줄어든 수치다.

제2운창호법 시행 전인 4월25일부터 6월24일에 적발된 1207건(면허정지 420건, 취소 740건, 측정거부 47건)과 비교했을 때 21.4%가 감소했다.
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줄었다.

제2운창호법 시행 후 106건의 음주사고가 발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6건, 262명의 사상자보다 각각 32.6%와 39.3%가 감소한 것이다.

또 제2운창호법 시행 전인 4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 음주사고 134건, 사상자 233명과 비교했을 때 각각 21.6%와 31.8%가 줄어 들었다.

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다. 올해 1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음주사고로 숨진 사람이 14명으로 나

타났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명이 늘어난 수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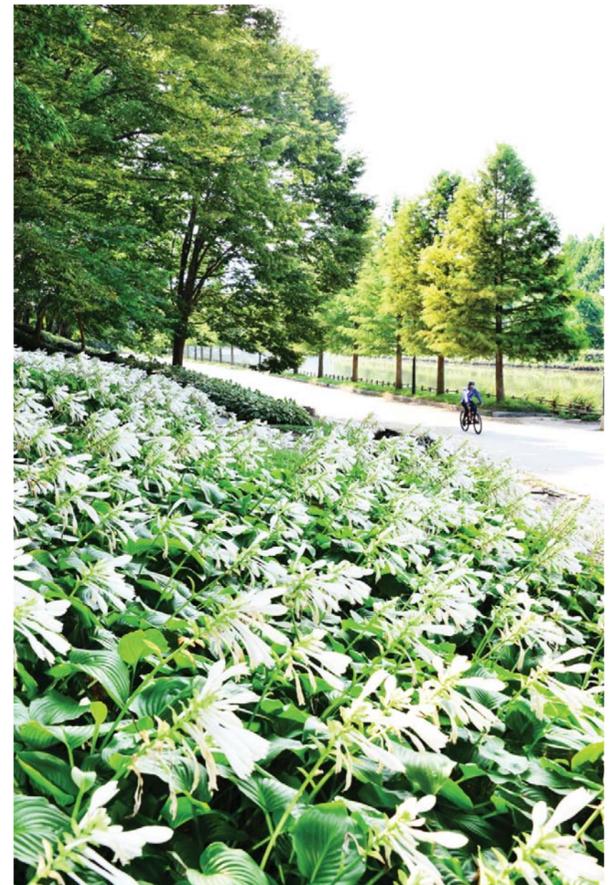
하지만 제2운창호법 시행 후인 6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1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5명이 줄어 들었다.

전남경찰청 관계자는 "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"며 "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"고 당부했다.

한편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, 면허취소 기준을 0.10%에서 0.08%로 강화했다.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.

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.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.

신봉우 기자



매혹적인 향기로 가을손짓하는 옥잠화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군 관광제림에 가득 핀 옥잠화 꽃송이들이 여행객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. 아름다운 꽃과 우아한 향기로 가을을 부르는 옥잠화는 꽃봉오리가 마치 옥비녀를 닮아 그 이름이 붙었다. 향기가 짙은 꽃이 저녁에 활짝 피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진다.

## 고흥군, 2인 이상 전입세대 · 청년부부에 주거안정자금 지원

고흥군이 지난해 11월 인구정책지원 조례 제정 후 인구유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청년부부 주택구입·전세 대출이자, 청년 주거 임대료 등을 지난 26일 첫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.

전입세대 지원금은 타 시·군·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

해 '19. 1.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(20만원), 자동차세(10만원), 주민세(3년)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전입지원금 첫 수혜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흥군 도양읍으로 가족이 전입한 박 모씨 등 5명으로 전입지원금, 자동차세 등 130만원을 지원 받았

다.

또한, 청년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의 경우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는 주택구입·전세 대출이자를 매년 100만원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,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은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.  
청년부부 주택구입·전세 대출이자

는 고흥읍에 거주하는 방 모씨 등 4명에게 366만원, 청년주택 임대료는 이 모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첫 지급했다.

이밖에도 고흥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속 직원 5명 이상 기관·단체·기업 등이 직원, 가족 등 5명 이상 인구유입 시 50만부터 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.

고흥=한윤섭 기자

#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!!



- 원청의 안전 →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.
- 직장내 괴롭힘 →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.
- 장시간근로는 →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